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9
----------	----

제출연월일 : 2006년 8월 2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1.11.)에 따라 주민이 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개정 전에는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2. 주요내용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